

경기도 조례 제·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6년 3월 9일

기 획 위 원 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06년 2월 27일

경기도지사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2월 27일

다. 상 정 일 자 : 제20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위원회(2006. 3. 9)
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기획관리실장 황준기)

가. 제안이유

- 종전에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
- 조례의 제정이나 개·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「지방자치법」이 개정('06. 1. 11)됨에 따라
  - 도 및 50만 이상 대도시 :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
  - 시·군 :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
- 주민에 대한 조례 제·개폐 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, 도정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주민수인 100분의 1 이상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조례 제·개폐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100분의 1 이상으로 함(안 제2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오태철)

- 경기도 조례 제·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
-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규정한 지방

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('06. 1. 11)됨에 따라

- 도 및 50만 이상 대도시 :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
- 시·군 :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
- 주민에 대한 조례 제·개폐 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, 도정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주민수인 100분의 1 이상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-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
-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
-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·개폐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100분의 1 이상으로 하였음.
- 이상과 같이 경기도 조례 제·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
- 금번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
- 지난 '06. 1. 11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개정법률이 정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도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주민수인 100분의 1 이상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
- 이는 도민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의 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도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를 한층 더 다져나가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됨.

※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 연서수

- 시·도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: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
- 시·군 및 자치구 :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경기도 조례 제·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서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연서 주민수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의 주민이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